

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260
------	------

2017. 11. 30.  
기획경제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년 11월 13일, 박운기의원의외 1명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4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】

-제12차 기획경제위원회(2017.11.30.)상정, 제안설명,  
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박운기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「지

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임.

-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되면서 위원회 심의가 절차 이행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될 수 있으므로, 위원회의 대면심의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 심의가 요식행위가 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따라서, 사회투자기금심의위원회 회의출석을 회의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제8조제4항 중 “출석으로”를 “출석(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)으로”로 한다.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#### 가. 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기금운용 및 수행기관 선정 등을 담당하는 ‘사회투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’의 회의가 서면대체가 가능함에 따라, 서면심의가 남용되어 심의위원회가 형식화 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, 조례상의 위원회 출석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

-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)는 2012년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고, 기금을 설치·운용중이며, 조례에 따라 “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“를 운영 중임.
- 「기금관리기본법」의 개정으로 2017년부터 사회투자기금이 시 직영으로 전환되면서, 기금을 융자하여 민간 자금을 매칭한 후 사회적 기업에게 일정비율의 이자를 받고 재융자하는 수행기관의 선정 또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음.
-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내역을 살펴보면, 총 9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, 이중 서면심의를 단 한 차례에 불과함.

〈최근 3년간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〉

연번	개최일	주요안건	참석자	불출석자	비고
1	'15.4.10	2014년 사회투자기금 결산보고 2015년 사회투자기금 운용 및 사업계획 변경 (재)한국사회투자 중간평가 목표 및 기준	6명	3명	회의 개최
2	'15.11.2	2015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 2016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	6명	3명	회의 개최
3	'16.2.23	2015년 사회투자기금 결산보고 (안) 2016년 사회투자기금 운용 계획 변경 (안)	5명	4명	회의 개최
4	'16.10.12	사회투자기금 개편계획 (안) 보고 사회투자기금 존속기한 연장 (안) 2016년 사회투자기금 운용 및 사업 계획 변경 (안)	5명	4명	회의 개최
5	'16.11월	2017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(안) 심의	5명	2명	서면 대체
6	'17.2.17	2016년 사회투자기금 결산보고 (안) 2017년 사회투자기금 운용 계획 변경 (안) 2017년 사회투자기금 사업계획 (안)	9명	5명	회의 개최
7	'17.6.12	2017년 용자 수행기관 선정	7명	6명	회의 개최
8	'17.7.26	2017년 사회투자기금 운용 계획 변경(안) 2017년 사회투자기금 하반기 수행기관 선정 계획(안)	8명	5명	회의 개최
9	'17.9.19	사회투자기금 '17년 하반기 수행기관 선정 심의	7명	6명	회의 개최

※ 위원회는 총 13명(당연직 2명, 위촉직 11명)으로 구성됨.

기금설치 이래 총 15회의 회의 중 서면심의는 총 4회임.

- 총 9회의 회의 중 단 한 번의 서면심의회는 수치상으로 낮은 비율일 뿐만 아니라 운용계획이 변경된 이후 2017년 개최된 회의는 모두 대면심의회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, 시가 서면회의를 최소화하고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했음을 볼 수 있음.
- 그러나 유일하게 서면으로 진행된 2016년 제3차 회의의 경우, 사회투자기금의 운영 형태를 직영으로 변경하던 시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대면심의회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판단됨.
- 현재까지 위원회의 운영이 대면심사 위주로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,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출석을 명확히 규정하여 대면심사를 담보하려 하는 동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함.
- 하지만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경우,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1)에 의거,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및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음.
- 이에따라 동 조례가 통과될 경우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

---

1) 제4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(화상회의를 포함한다)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
한해 대면심의를 인정하게 되어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, 획일적으로 '서면불가' 보다는 비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단서조항을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- 시는 동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서면심의를 최소화하고, 위원회의 위원들의 출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한편 시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을 위해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, 기금의 신속적 운용과 긴급한 사안 대처를 위해서 서면심의를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추가 규정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.
-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,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, 두 가지로 서면심의를 인정하는 예외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(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60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11월 30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기금의 신속적 운용과 긴급한 사안대처를 위해 조례상에 서면심의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임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가. 서면심의에 대한 단서규정을 신설함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

1.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8조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8조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(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)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8조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</li> <li>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</li> </ol>

##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

1.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수정안
<p>제8조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단서조항 신설〉</p>	<p>제8조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u>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</u></li> <li>2. <u>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</u></li> </ol>